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문정복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811

발의연월일: 2024. 7. 16.

발 의 자:문정복・민병덕・부승찬

최기상 • 박상혁 • 김준혁

백승아 • 박홍배 • 문금주

김영호 · 송재봉 · 윤준병

의원(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학교안전사고를 예방하고 학생·교직원 및 교육활동참여자가 학교안전사고로 인하여 입은 피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학교안전사고보상공제 사업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학교의범위에는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초·중등교육법」에 따른초·중등학교, 「평생교육법」에 따른 평생교육시설 및 「재외국민의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학교가 포함되어 있음.

한편, 개개인의 소질과 적성 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학습자 중심의교육을 위하여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이 시행(2021. 1. 12, 제정, 2022. 1. 13, 시행)됨에 따라 대안교육기관을 현행법에 따른 학교의범위에 포함시킬 필요성이 제기됨.

이에 대안교육기관을 학교의 범위에 포함하여 학교안전사고로부터 학생·교직원 등을 보호하고, 학교안전사고보상공제 사업의 가입자가 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호마목 신설).

법률 제 호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에 마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마.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대안교육기 관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제2조(정의)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학교"라 함은 다음 각 목의	1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시설을 말한다.			
가. ~ 라. (생 략)	가. ~ 라. (현행과 같음)		
<u><신 설></u>	마.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대안교육기관		
2. ~ 6. (생 략)	2. ~ 6. (현행과 같음)		